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대학이 지역 혁신, 산학협력 등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별 특성화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사 및 행정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·담당관 및 행정실의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, 그 설치 범위를 국립대학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,

학과·학부 설치 원칙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00. ~ 2024. 1. 00.) 결과, 특기할
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학교규칙”을 “대학 및 교육대학에 학교규칙”으로, “범위에서 대학은”을 “바에 따라”로, “대학원을, 교육대학은 대학원을 각각”을 “대학원, 그 밖에 필요한 학사조직(이하 “단과대학 등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”를 “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등”으로, “학과 및 학부의”를 “그 밖의 학사조직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장”을 “단과대학의 장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,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(단과대학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) 또는 대학원의 장”을 “제3항에 따른 단과대학 등의 장은 총장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자”로, “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”를 “단과대학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교수 중”을 “교수 또는 부교수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별표 6의 범위에서”를 “제4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“별표 8의 범위에서”를 “제4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

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단과대학”을 “단과대학 및 대학원”으로 한다.

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단과대학 등) ① <u>학교규칙</u>	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	제6조(단과대학 등) ① <u>대학 및 교</u>	육대학에 <u>학교규칙</u> -----	
하는 <u>범위에서 대학은 단과대학</u>	및 <u>대학원을, 교육대학은 대학</u>	--- <u>바에 따라</u> -----	-- <u>대학원, 그 밖에 필요한 학</u>	
<u>원을 각각 둘 수 있다.</u>		<u>사조직(이하 “단과대학 등”이라</u>	<u>한다)을</u> -----	
		<u><삭 제></u>		
② <u>대학의 단과대학(단과대학을</u>	<u>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을</u>			
<u>말한다) 및 대학원에 학과 및</u>	<u>학부를, 교육대학 및 그 대학원</u>			
<u>에 학과를 둘 수 있다.</u>				
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</u>	<u>대학 · 대학원 · 학과 및 학부에</u>	③ <u>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등</u> --		
<u>장을 각각 두되, 단과대학 및 대</u>	<u>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</u>	-----		
<u>중에서,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</u>	<u>수 · 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</u>	-----		
<u>둔다. 다만, 전문대학원 및 특수</u>	<u>대학원의 장은 다른 대학원의</u>	----- <u>그 밖의 학사조직의</u> ---		
<u>장이나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</u>	<u>부의 장 중에서 둘 수 있다.</u>	-----		
		---. -----		
		----- <u>단과대학의 장 등</u> -		
		-----.		
④ <u>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</u>	<u>장은 총장의, 학과 및 학부의 장</u>	④ <u>제3항에 따른 단과대학 등의</u>		
<u>은 단과대학의 장(단과대학을</u>		<u>장은 총장 또는 학칙으로 정하</u>		
		<u>는 자</u> -----		

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을 말한다)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

⑤ 삭 제

⑥교육대학의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, 학과의 장은 총장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

제9조(대학의 하부조직) ① (생략)

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중에서 보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⑤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에 별표 6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.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

----- 단과대학 등 -----

-----.

<삭 제>

제9조(대학의 하부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교수 또는 부교수 중 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-----

----- 제4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.

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⑥ (생략) ⑦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<u>별표 8의 범위에서</u> 행정실을 두되, 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<u>단과대학</u>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통합하여 둘 수 있다.	----- -----. ⑥ (현행과 같음) ⑦----- <u>제4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 내에서</u> <u>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----- ---. ----- <u>단과대</u> <u>학 및 대학원</u>----- -----.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063 (044) 203 - 6919